

[2024년 상반기] 공공기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교육 신청 안내

I 교육개요

■ 목적

-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기관 내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높임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역할에 따른 단계별 업무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
- 기관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

■ 관련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 교육 등)

■ 24년도 주요사항

-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(2022~2024년)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,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

【성희롱 예방조치 실적 점검 기준표】

<'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, 여성가족부>

- ('24년) 기관 고충상담원 **1인 이상**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* 및 **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**** 교육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

*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('22년~'24년 교육이수)를 이수자로 인정

** ('23년 신규지정 미이수자) '24년 상반기 교육 이수, ('24년 상반기 신규지정) '24년 하반기 교육 이수('24년 하반기 신규지정) '25년 상반기 교육 이수

-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, 1년이상 경력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(신규기관 제외)

■ 교육내용 및 교육신청방법

- 교 육 명: [2024년-상반기] 공공기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
- 교육일시: 2024. 04. 24.(수), 10:00 ~ 18:00(7시간)
- 교육장소: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(제주시 선덕로8길 12)
- 교육대상: 공공기관 내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등 30명 내외
- 신청기간: 2024년 3월 18일(월) ~3월 29일(금) 18:00까지, (선착순 접수)
- 신청방법: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발송(전자문서/e-mail)
- 교육내용

구분	교육과정	주요내용	교육방법
10:00~12:00 (2시간)	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	- 성인지 감수성 이해 -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-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- 성희롱(성폭력) 발생요인과 조직문화 -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	대면
13:00~15:00 (2시간)	성희롱(성폭력) 관련 법제도, 사례분석	- 현행 법령과 성희롱 -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-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, 사례 -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절차 - 성희롱·성폭력 상담기법 이해	대면
15:00~18:00 (3시간)	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	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-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-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- 2차 피해 예방	대면

※ 상기 교육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■ 교육일정

교 육 일	시 간	내 용	비 고
2024. 4. 24(수)	~ 09:50	접수 및 안내	
	10:00~12:00	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	Q&A 포함
	점심시간		
	13:00~15:00	성희롱(성폭력) 관련 법제도, 사례분석	Q&A 포함
	15:00~18:00	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	Q&A 포함

※ 상기 교육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■ 기타사항

- 본 과정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(성폭력)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만 수강 가능한 의무교육임
- 교육대상자 확정 및 교육 수수료 관련 별도 공문 발송
-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음(선착순 접수)
-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이내(2022년 이후)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 2023년 교육 필히 이수

※ 기관 내 지정된 고충상담원 중 기존 고충상담원 교육('22년~'23년) 미이수자 신청 권장

※ 기관 내 지정된 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및 신규지정 고충상담원 6개월 이내 교육 폭력예방 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평가항목 중 고충담당자(상담원) 전문교육 이수 항목 인정

- 고충상담원 교육은 대면 교육이 원칙이며, 업무병행과 잦은 이석 등 원칙 불이행시 미이수 처리 예정
- 교육문의: 064-712-4941(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교육담당자)